

제330회 임시회
2014. 6. 20.(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6. 20.(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6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6월 11일

-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가. 제안이유

○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혁신도시관리본부 한시정원(3급, 1명) 존속기한 연장

- 2014년 6월 30일까지 → 2015년 6월 30일까지(1년)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58
----------	-----

제출연월일 : 2014년 6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함.

2. 주요내용

<한시기구 연장>

- 혁신도시관리본부 한시정원 3급 1명의 존속기한 연장
2014년 6월 30일까지 → 2015년 6월 30일까지(1년)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조례 제3497호(2012. 8. 31.)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2조 중 “2014년 6월 30일”을 “2015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 칙(2012. 8. 31 조례 제3497호)</p> <p>제2조(한시정원)본청의 정원 중 4명(3급 1, 4급 1, 5급 2)의 존속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본청의 정원 중 1명(3급)의 존속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부 칙(2012. 8. 31 조례 제3497호)</p> <p>제2조(한시정원)본청의 정원 중 4명(3급 1, 4급 1, 5급 2)의 존속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본청의 정원 중 1명(3급)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p>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분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 ⑤ (생략)